

19세기말 제주도의 가족 구성¹⁾

— 德修里 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이 창 기

1. 서 론

제주도 가족에 대해서는 1970년 이후에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연구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지만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 제주도 가족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가족 제도는 조선 중기 이후의 전통적인 한국 가족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철저한 장남 분가, 재산 상속의 균분 경향, 문중 조직의 미발달, 육지와 상이한 혼인 의례, 부락내혼의 경향,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死婚의 관습, 조상 제사의 분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핵가족

* 이 연구는 1993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 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1) 이 논문은 한국사학회 제69회 월례연구회(1995. 4.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회 참여해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를 발굴하고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주신 제주대학교 도서관 향토자료실과 관계 인사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적 성격 등은 가계 계승과 부계 친족 집단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직계 가족을 지향하는 육지부의 전통적인 한국 가족과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의 현대 사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족 제도를 역사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 가족 제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언제부터 형성되었으며, 제주도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가족 제도를 형성·유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의 가족 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 중에는 조선 중기 이전에 한국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들과 유사한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제도사적 관심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부계 친족 집단이 강하게 결속되지 못하고 처족이나 인척·외척과도 긴밀하게 결합하는 모습, 아들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諸子均分相續傾向, 조상 제사를 자손들이 나누어지내는 祭祀分割의 관행 등은 조선 중기 이전의 한국 전통 가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특징들과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주도의 가족 제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조선 중기 이전의 전통적인 한국 가족 제도와 어떻게 접맥될 수 있을까? 조선 중기 이전의 가족 제도가 오늘날까지 잔존해온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관계없이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 형태일 것인가? 제주도의 가족과 친족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도들에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주도 가족 제도에 관한 역사적 조명이 소홀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서 발굴된 여러 부락의 戶籍中草들은 제주도 가족 제도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이 수년에 걸쳐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발굴한 이 호적중초들은 군현 단위의 행정 관서에서 작성한 기존의 호적 대장들과는 달리 마을 단위에서 작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 도서관의 향토자료실이 발굴한 戶籍中草를 자료로 하여 제주도 가족 제도의 제도사적 맥락을 추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기왕에 발굴된 호적중초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료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897년 德修里의 호적중초를 대상으로 19세기 후반의 제주도 가족 구성에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제주도의 戶籍中草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먼저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된 해석에 이를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호적중초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호적중초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선 시대의 호구 조사 일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I. 조선 시대의 호구 조사

호적대장은 전근대 국가에서 주민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각종 力役과 貢納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작성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개국초부터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호적 관련 시책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매 3년(子·卯·午·酉年: 이것을 戶籍式年이라 한다)마다 호구를 조사해서 호적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호적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各戶에서 戶口單子를 2부 작성하여 里에 제출하면 각 里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戶籍中草를 작성하고, 각 호에서 수합한 호구단자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를 해당 관청에 제출한다. 관에서는 이들 자료들과 과거의 호적대장을 대조하여 새로운 호적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점검을 마친 호구단자와 호적중초는 수령의 署押이나 관인을 찍어 각 里에 내려보낸다. 이 중 統戶의 家座를 부여받은 호구단자 1부는 호주에게 환급하고(이것이 別給戶籍으로서 신분 증명서 구실을 한다), 호적중초는 里에서 보관한다(金錫禧, 1988; 高昌錫, 1993).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호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이나 인구 구조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호구 조사가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茶山の 『牧民心書』에 의하면 조선 시대 호적대장의 작성 방법에는 覈法(覈法)과 寬法(寬法)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覈法이란 1口 1戶도 누락시키지 않고 호구의 실수를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주거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실제의 생활 단위, 즉 自然戶

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하여 관법이란 모든 家戶와 모든 丁口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家戶數를 참작하여 중앙에서 각 군현에 배정한 原總에 맞추어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인위적이고 법제적인 編戶方式이다. 이러한 관법은 여러 家戶를 한 戶로 묶어서 편제하거나 실제의 丁口數를 줄여서 대장에 기록하는 편법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호구 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산도 나라를 다스리는 대도로서 핵법을 쓰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온 나라가 그러하지 못한데 한 고을의 수령이 홀로 핵법을 쓴다면 부역이 날로 많아지고 소란과 원망이 날로 일어날 것이며, 아전이 그에 따라 농간질하고 백성이 뇌물을 바쳐야 할 것이므로 수령된 자는 습속에 순응하여 오로지 관법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관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산은 부역이 균평해질 수 있도록 관내의 가좌와 백성들의 살림살이의 허실을 헤아려 원총을 각 촌에 고르게 배정하는 관법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예시하고 있다(茶山研究會, 1985: 76~107).

다산의 언급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호적대장을 작성할 때는 원총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편호하는 관법이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²⁾

한편 조선 시대의 호적 제도가 경국대전으로 체계화되어 조선 후기까지 그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많은 수령들과 아전 및 호적 업무를 담당할 籍吏들은 식년의 호구 조사를 축재의 기회로 삼아 온갖 농간을 다 부렸던 것이다. 신분을 冒稱·冒錄하거나 각 촌에 배정되는 호총을 줄이기 위해 적리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고,

2) 李樹健은 이미 조선초부터 각 관별로 배정된 원총에 근거하여 호구 통계를 작성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힌 바가 있다(李樹健, 1972).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에서는 피역을 위한 도망이 속출하기도 했다. 그 실상을 다산은 『목민심서』에 매우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거니와,³⁾ 호적제의 적폐는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金東攄, 1993).

이처럼 조선 시대 호적 자료는 실제 생활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이 점을 간과하거나, 신빙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달리 유용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족·인구·신분 등을 분석하는 기본 자료로 호적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호적 제도는 1896년에 새로운 戶口調査規則과 戶口調査細則이 반포되면서 크게 변모한다. 이 때 변화된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崔弘基, 1973; 金泳謨, 1982: 132~36).

- 1) 종래 3년 간격으로 식년에 작성하던 것을 이후 매년 작성한다. (규칙 제3조)
- 2) 종래의 五家作統 방식을 10戶 1統으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규칙 제2조)
- 3) 원호를 은닉하여 漏籍하거나 원적내의 인구를 고의로 누탈하는 자는 인민의 권리를 허유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에 의거 징벌한다. (규칙 제4조)
- 4) 호주의 부모형제자손이라도 따로이 살면 분적하고, 친지의 호내에 동거하거나 기식하는 자도 입적토록 하여 거주 단위로 호적을

3) “나라 안의 모든 고을이 吏房을 제일 좋은 자리로 여기지만 식년에 이르러서는 籍色(호적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이속)을 제일로 여기니, 적리가 되면 큰 고을의 경우에는 넉넉히 일만 냥을 먹고 작은 고을일지라도 모두 삼천 냥이 넘는다”(丁若鏞, 『牧民心書』 卷六「戶典」, 戶籍條, 茶山研究會, 1985, pp. 78~81).

작성한다. (세칙 제3조)

이와 같이 1896년의 새 戶口調查規則은 부모형제자손이라 하더라도 따로 살면 분적토록 하고, 누적자나 누탈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지켜졌느냐 하는 점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새 호구 조사 규칙은 종래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관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실제적인 생활 단위가 호적 작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문건이라 할 수 있다.

Ⅱ. 제주도의 호적중초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이 현재까지 발굴한 戶籍中草는 中文里를 비롯하여 廻水里·大浦里·穡達里·道文里·德修里 등 여러 부락에 걸쳐 있다. 이들 부락들은 조선 시대의 大靜縣 관할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서귀포시 중문동과 산방산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 시립 탐라도서관에는 濟州牧과 旌義縣에 소속되었던 지역의 호적중초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으나 이들 호적중초는 두루말이 형태의 미정리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짐작된다.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호적중초의 작성 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약식으로 기재된 戶口統籍 혹은 戶籍人口成冊은 여기서 제외한다).

中文里: 1801, 1804, 1807, 1810, 1813, 1816, 1819, 1825, 1828, 1837, 1840, 1843, 1846, 1849, 1855, 1899 (총 16책)

廻水里: 1852, 1855, 1858, 1862, 1864, 1867, 1870, 1903, 1904, 1906, 1907, 1908 (총 12책)

大浦里: 1867, 1873, 1888 (총 3책)

穡達里: 1867, 1876 (총 2책)

道文理: 1873, 1898, 1901 (총 3책)

德修里: 1804년부터 1897년까지(1822년제외) 매 3년마다 작성. 1898년부터 1908년까지 매년 작성 (총 42책)

이들 중에서도 특히 德修里⁴⁾의 호적중초는 한 세기의 자료가 거의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어서(1822년도 분만 누락) 특정 시점의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가족 구조의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았다.

Ⅲ. 제주도 호적중초의 자료적 가치와 한계

제도사적 연구에 역사적 자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제주도에는 역사적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典籍類의 발굴이 특히 미진한 듯하다. 여기에는 전적류의 보존을 어렵게 하는 기후 풍토(예컨대 습기가 많고 좀벌레가 성한 환경 같은)와 자료를 생산·보존·유지·전송할 수 있는 문중 조직이나 유림의 활동이 미약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최근의 4·3 사건으로 인한 멸실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러한 가운데 각 마을 단위에서 작성된 호적중초가 발굴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몇몇 마을에 국한되어 있고 시기적으로도 19

4) 德修里는 南濟州郡 安德面에 소속되어 있는 부락으로서 제주도의 서남단에 있는 山方山의 북쪽편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自丹里로 불려지다가 1831년에 기존의 자단리에서 分里하여 新堂里로 평명되었고, 1840년에 덕수리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高昌錫, 1993).

세기에 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료가 극히 빈약한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호적중초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인적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 신분 관계, 인구 현상 등의 연구에 있어서는 일차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호적중초는 각 가호의 호주가 작성한 호구단자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監考·厘正 등이 작성하기 때문에,⁵⁾ 주로 관법에 의해 작성되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관찬의 호적대장보다 사실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高昌錫, 1993). 다산도 『목민심서』 戶籍條에서 “중초란 초본인데 이것이 대장에 비하여 좀더 사실에 따른 것이다”라고 註로서 밝혀둔 바가 있다(茶山研究會, 1983: 99). 제주도의 호적중초도 구체적인 내용의 기록에 있어서는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호적중초는 제주도의 과거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제주도 가족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도 또한 같은 생각에서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가족제도를 연구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1896년 이전에 작성된 호적중초와 1896년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된 이후에 작성된 호적중초는 작성 기준이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1896년 이전의 호적중초들은

5) 호적중초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監考와 厘正은 모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확인되었다. 호적중초의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동일인명에 同音異字를 사용한 예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연령 표기의 오차가 많은 것으로 보아 호주가 직접 작성한 호구단자에 의존했다기보다는 제삼자인 監考나 厘正 등의 작용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家戶를 合戶하여 한 戶로 편제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실제 하나의 생활 단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친족 성원들이 모두 한 호 속에 편입되어 대규모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견되었다. 호주의 결혼한 형제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물론이고 숙부나 당숙의 가족들, 종형제 및 재종형제들의 가족들, 처부모를 비롯한 처남·처제 등 처족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1896년 이전의 호적중초가 여러 가호를 묶어서 한 호로 편호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1896년을 전후한 시기의 호수와 인구 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덕수리의 호당 평균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804년의 4.24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세기 후반에 6명~7명 수준을 지속하다가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된 이후에는 3명~4명 수준으로 갑자기 감소하고 있다(高昌錫, 1993). 특히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기 직전 식년인 1894년과 직후인 1897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즉 1894년에는 총 호수 76호에 인구 526명(호적중초 말미의 집계 수치임)으로 호당 평균 인원이 6.88명 인데 비해 1897년에는 169호 530명(필자가 집계한 수치임)으로서 호당 평균 인원이 3.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수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과 3년 사이에 호수가 2.2배 이상 증가하고 호당 평균 인원이 3.74명이나 감소하였다는 것은 실제 생활 단위의 분할이라기보다는 장부상의 분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1894년의 호구 조사시에는 여러 가호를 묶어서 한 호로 편호하는 관법의 방식을 취하였다가 1896년 이후에는 실제 생활 단위로 조사하였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호적중초 작성 기준의 변화는 구체적인 家戶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1894년의 한 호구가 1897년에

여러 호구로 분할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應孝 家の 分籍

宋殷吉 家の 分籍

1894년		1897년	
戶主	金應孝	戶主	金應孝
妻	任氏	婦	尹氏
子	麗哲	戶主	金汝哲
婦	尹氏	妾	文召史
次子	麗秀	戶主	金汝水
次婦	宋氏	妻	宋氏
孫女		女	
次子	麗黃	戶主	金汝黃
		妻	梁氏
次子	麗珍	戶主	金汝辰
		妻	姜氏
弟	應奎	戶主	金應奎
弟妻	高氏	妻	高氏
侄子	麗吉	子	汝吉
次侄子	麗旭	婦	宋氏
侄女		次子	汝郁
		次婦	李氏

1894년		1897년	
戶主	宋殷吉	戶主	宋殷吉
祖母	金氏	祖母	金氏
妻	姜氏	妻	姜氏
弟	殷由	出系子	相浚
弟妻	吳氏	子婦	李氏
六寸弟	殷桂	弟	殷由
		弟妻	吳氏
		再從弟	殷桂
再從祖	文智	戶主	宋文智
再從祖妾	李召史	妾	李召史
七寸叔	時祚	1897년에는 이 출한 것으로 짐작된다.	
七寸叔妻	金氏		
八寸妹			
七寸叔	興祚	戶主	宋興祚
七寸叔妻	吳氏	妻	吳氏

* 동일 인명에 同音異字를 사용하는 사례는 호적중초에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1896년 이후 변화된 호적중초의 작성 원칙이 제주도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 듯하다.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에서 발굴한 상기 자료만 가지고 189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호당 평균 인원의 차이가 큰 부락도 있고 별 차이가 없는 부락도 있어서, 덕수리와 같이 새 호구 조사 규칙을 적용하여 실생활

단위인 자연호 중심으로 호적증초를 작성한 마을도 있고, 종래의 편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마을도 있는 듯하다.⁶⁾

실제의 생활 단위(자연호)와는 관계없이 호주의 가까운 혈족을 전부 한 호구에 편성하는 編戶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에는 커다란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당초 19세기초부터 19세기말에 이르는 1세기 동안의 가족 구조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1897년의 덕수리 자료만 가지고 19세기말의 제주도 가족 구조를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기재 누락이나 과다 집계와 같은 자료의 정확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적인 인구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사 누락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통계 조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기초 소양이 빈약한 당시에는 기재 누락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의 인구 구성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소년층에서 기재 누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극히 적은 숫자이겠지만 노년층 인구 중에는 이미 사망한 자를 등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의심되기도 한다. 기재 누락이나 과다 집계와 같은 문제는 가구의 크기와 세대별 구성을 분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6) 중문리의 경우 1855년의 호당 평균 인원이 7.38명인데 1899년에는 4.29명으로 3.1명이나 대폭 줄어들어 호구 조사 규칙 반포 이후 분호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수리의 경우에는 1870년에 호당 평균 8.14명에서 1903년에는 6.79명으로 약 1.35명이 줄어든 데 그치고 있으며, 도문리의 경우에는 1873년의 7.32명에서 1898년에는 6.79명으로 변화가 극히 미미하여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여러 호를 합하여 편호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듯하다.

셋째는 1897년의 호적중초가 실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하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장남까지 분석해서 독립호로 호적중초에 기록하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유형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덕수리의 호적중초에는 결혼한 장남을 독립된 호구로 분석시킨 예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덕수리에서는 제주도의 특징적인 가족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장남 분가 제도가 1897년 당시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장남을 부모와 한 호구에 편호하는 가정이 많았던 것인가? 이 점은 제주도의 가족 유형을 분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 유형을 분석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외에 호주 처의 본관과 四祖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 있는 점도 혼인 관계를 추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누대에 걸쳐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서라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새로이 등재된 이입자나 호주 처 이외의 기혼 여성의 신원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연령이나 직역의 기재가 부정확하다거나, 인명의 同音異字 남용 문제 등도 연구 작업의 속도와 정밀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호적중초가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해석 과정에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본 자료는 한 세기 전의 제주도 가족 구조를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3. 인구 구성과 호주의 성격

I.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과 성비

1897년 호적중초에는 169호에 530명의 인구가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과 성비를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성비(性比)는 여성 인구 100에 대한 남성 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덕수리의 성비는 연령 계급별로 기복이 심하기는 하지만 마을 전체의 성비 83.4는 일제하에서 시행된 국세 조사의 제주도 성비 85.5~87.5(李昌基, 1982)에 비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호적중초에 어느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에 치우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소년 연령층에서 성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성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과 대단히 상이한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은 15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조사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지만 15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연령층의 기록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심증은 연령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덕수리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소년 인구층이 매우 빈약하고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볼 때 농경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라밋형이 아니라 감퇴 인구적 경향을 가진 壺型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시기에 소년층의 심한 인구 결손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 연령층에 기재 누락이 상당히 많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노년층에서는 일부 과다 집계 의심되기도 한다. 조선 시대 관찬

의 호적대장에 나타난 인구 통계가 완전성이 낮고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지만(權泰煥·愼鏞廈, 1977; 은기수, 1987; 李興卓, 1990), 그 중에서도 특히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층의 조사 누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⁷⁾ 기록 내용이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덕수리의 호적중초에서도 소년 인구층의 기재 누락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표-1〉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1897년 덕수리의 인구 구성				1925년 제주도*	
	남자	여자	구성비	성 비	구성비	성 비
0~4	1 (0.4)	3 (1.0)	55 (14.4)	33.3	39.6	104.5
5~9	11 (4.6)	11 (3.8)		100.0		109.8
10~14	10 (4.1)	19 (6.6)		52.6		100.6
15~19	18 (7.5)	19 (6.6)	390 (69.8)	94.7	50.7	78.9
20~24	19 (7.9)	29 (10.0)		65.5		70.9
25~29	27 (11.2)	29 (10.0)		93.1		70.8
30~34	22 (9.1)	32 (11.1)		68.8		76.3
35~39	19 (7.9)	24 (8.3)		79.2		81.4
40~44	27 (11.2)	30 (10.4)		90.0		85.4
45~49	14 (5.8)	19 (6.6)		73.7		80.8
50~54	15 (6.2)	19 (6.6)		78.9		85.5
55~59	11 (4.6)	17 (5.9)		64.7		79.6

7) 조선 시대의 호적 자료 중에는 미성년자를 거의 기록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다. 1630년의 山陰帳籍에는 685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는 호주를 제외하면 24명에 불과하였으며(崔在錫, 1983: 380), 1807년 良佐洞의 戶籍草案에도 상민 여자의 경우에는 6세 이상을 모두 기록하고 있으나 그외에는 미성년자가 거의 기록에서 빠져 있다(崔在錫, 1983: 407~09).

60~64	9 (3.7)	14 (4.8)	85 (15.8)	64.3	9.7	77.3
65~69	8 (3.3)	9 (3.1)		88.9		76.0
70~74	10 (4.1)	7 (2.4)		142.9		66.1
75~79	6 (2.5)	4 (1.4)		150.0		62.0
80+	14 (5.8)	4 (1.4)		350.0		52.0
	241 (99.9)	289 (100.0)	530 (100.0)	83.4	100.0	87.0

* 朝鮮總督府, 『簡易國勢調査結果報告要約』, 1925.

20세기초 인구 성장과 연령 구조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선더버그 G. Sundbärg는 인구 구조를 증가형 인구, 정지형 인구, 감퇴형 인구로 유형화하여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 비율을 각각 40%, 26.5%, 20%로 설정한 바가 있다(尹鍾周, 1973: 35).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구 조사라 할 수 있는 1925년 간이 국세 조사의 제주도 인구 구조에서도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 비율이 약 40%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1897년 덕수리의 인구 구조에서도 15세 미만 인구가 적어도 30%~40%는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15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층의 인구 집계(390명)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60세 이상 노인 인구를 10% 정도로 고정한다면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는 약 200명~3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추산이 보다 사실에 접근한 것이라고 한다면 1897년 덕수리 호적증초에는 15세 미만의 소년 인구층에서 150명~250명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10~20명 정도의 과다 집계가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⁸⁾ 노년층의 약간의 과다 집계를 상쇄하더라도

8) 노년층의 과다 집계는 사망 후에도 그대로 호적에 남아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기 때

순수한 조사 누락 추정자는 130명~240명 정도에 이른다. 이는 호당 평균 0.8명~1.4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점은 가구 규모나 가족 유형을 해석할 때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호주의 職役과 신분 구성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에 기록된 호주의 직역은 여 호주의 氏 호칭과 召史 호칭을 포함하여 24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호주의 직역과 신분

양 반		평 민					
座首	6	品官	3	城將	3	假率	3
別監	23	別將	3	將官	1	旗牌	3
掌議	87	校生	2	軍器監	1	果直	1
通政	5	執事	1	鎭撫	1	自望	3
幼學	9	孝行	1	千摠	3	減番?	1
氏(女)	3	孝蔭	1	把摠	4	召史(女)	1
133		36					

분석 자료의 작성 시기가 신분 제도가 거의 해체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신분별로 사회 현상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일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구단자에 직역을 엄연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라면 비록 제도로서의 신분제는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과 관습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을 좁은 지역 사회에서는 과거의 신분적 배경이 그들의 사회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다.

문이 아닌가 한다(은기수, 1987).

그러나 직역을 기준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위에 밝힌 직역들 가운데서도 品官·別將·校生·執事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다. 자료 내부에서도 그들의 신분적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다. 孝行과 孝蔭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인 계층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양반으로 분류하기에 주저되는 경우는 모두 평민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양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호수가 133호, 평민으로 분류된 호수가 36호였다.

Ⅲ. 호주의 연령 분포

남자 호주 제도하에서는 가족원 중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남성이 호주가 된다. 덕수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4명의 여성 단독 가구를 제외하고는 165명이 모두 남자이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남자인 경우에는 동거하는 母나 祖母를 배제하고 호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부터 8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호주의 연령 분포가 폭이 넓은 것은 미성년자라도 남자를 호주로 삼는 원칙과 실질적인 가정 경영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연장자를 호주로 인정하는 호적 작성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호주의 연령 분포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양반 집단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고 평민 집단의 경우에는 60대와 70대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사이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연관이 깊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 내용은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 호주의 연령 분포

	20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이상	계
양 반	11 (8.3)	17 (12.8)	29 (21.8)	36 (27.1)	16 (12.0)	7 (5.3)	7 (5.3)	10 (7.5)	133 (100.1)
평 민	0	6 (16.7)	3 (8.3)	2 (5.6)	5 (13.9)	8 (22.2)	9 (25.0)	3 (8.3)	36 (100.0)
계	11 (6.5)	23 (13.6)	32 (18.9)	38 (22.5)	21 (12.4)	15 (8.9)	16 (9.5)	13 (7.6)	169 (99.9)

4. 家口의 크기

I. 가족과 가구: 친족 동거인의 문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을 분석하는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과 가구의 개념 구분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동거인의 경우는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친족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성원인지 비가족원으로서 단순한 동거인에 지나지 않는지 판별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다.

본고에서는 가구주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일단 가족원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친족원에 대해서는 호적증초에 기록되어 있는 친족원의 상황을 감안하여 영속적인 동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에만 가족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친족원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탁하고 있다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는 일단 동거인으로 간주하였다. 妻母의 경우는 장기 동거의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가족원으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동거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판별 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호적중초에 기록된 모든 성원을 일률적으로 가족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했을 때 동거인으로 판정되는 가구원은 叔父 1, 叔母 1, 조카 2, 姪女 2, 從祖父 1, 堂叔母 1, 從兄弟 1, 再從兄弟 1, 姑母 2, 姑從 2, 妻母 3 등 모두 17명으로 나타났다. 비친족 동거인이나 노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는 단 한 가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가족 유형의 분석에서는 제외하되 가구의 크기를 분석할 때는 가구원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Ⅱ.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와 평균 가구원 수

〈표-4〉에 의하면 1897년 덕수리의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는 1인 가구에서 9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인수 가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인원도 3인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1720년의 경상도 丹城縣과 1756년의 전라도 谷城縣의 평균 가구원 수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1720년 단성현의 평균 가구원 수는 5.9명으로 비교적 가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있는 솔거노비를 제외한다면 양반 집단 3.4명, 중인 집단 3.1명, 평민 집단 3.7명으로 덕수리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李興卓, 1990), 1756년 곡성현의 경우는 양반촌이 약 2.5명, 상민촌이 2.7~3.0명으로(崔在錫, 1983: 433) 덕수리의 자료

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4〉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와 평균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계	평균인원
양 반	5 (3.8)	52 (39.1)	32 (24.1)	19 (14.3)	14 (10.5)	8 (6.0)	1 (0.8)	1 (0.8)	1 (0.8)	133 (100.2)	423/133 =3.18
평 민	1 (2.8)	15 (41.7)	10 (27.8)	7 (19.4)	1 (2.8)	1 (2.8)	1 (2.8)			36 (100.1)	107/36 =2.97
계	6 (3.6)	67 (39.6)	42 (24.9)	26 (15.4)	15 (8.9)	9 (5.3)	2 (1.2)	1 (0.6)	1 (0.6)	169 (100.1)	530/169 =3.14

그런데 덕수리를 비롯한 조선 시대 호적 기록의 가구 규모는 소년 인구의 기재 누락이 매우 많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당 평균 0.8명~1.4명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추정을 인정한다면 덕수리의 실제 가구 규모는 4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덕수리의 가구 규모는 일제 시대 국세 조사의 제주도 평균 가구원 수가 약 4명 정도였던 것(李昌基, 1987)과 거의 일치한다.

가구 규모를 신분별로 비교해보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구성 비율은 평민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구성 비율은 양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서 양반 집단의 가구 규모가 약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당 평균 0.2명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의미있는 차이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5. 가족 유형

I. 세대별 가족 유형

친족 동거인을 제외하고 가족원만을 대상으로 세대 구성을 살펴본 결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7년 덕수리의 세대별 가족 구성은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구성이 단순한 1세대와 2세대 가족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표-5> 세대별 가족 유형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
양반	60 (45.1)	59 (44.5)	12 (9.0)	2 (1.5)	133 (100.1)
평민	14 (38.9)	20 (55.6)	2 (5.6)	0	36 (100.1)
계	74 (43.8)	79 (46.7)	14 (8.3)	2 (1.2)	169 (100.0)
1720년 山陰	23.8	59.0	16.0	1.3	100.1
1756년 谷城	49.2	46.1	4.4	0.2	99.9
1966년 濟州	16.5	62.7	15.8	5.0	100.0

1720년 山陰: 李興卓, 1990.

1756년 谷城: 崔在錫, 1983: 435.

1966년 濟州: 李昌基, 1988.

것이다. 덕수리의 세대별 가족 구성이 이처럼 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구 규모가 3인 전후의 소인수 가구로 나타났던 점과 일치하고 있다.

1897년의 자료를 1966년의 제주도 가구 구성과 비교했을 때 그동안 1세대 가족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2세대 이상 가족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두 자료를 단순 비교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제주도 가족은 현대에 와서 세대가 증가하고 구성이 복잡해진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세대별 가족 구성도 가구 규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년 인구층의 과다한 기재 누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세대 가족 중에는 실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중초에 미성년 자녀를 누락시킴으로 해서 1세대 가족으로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성년 인구가 제대로 기록되었다면 1세대 가족 중 많은 수가 2세대 가족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세대 가족 중에도 3세대에 포함되어야 할 가족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1897년 덕수리의 실제 세대별 가족 구성은 <표-5>의 수치보다 1세대 가족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2세대 이상의 가족은 다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다음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로 1897년 덕수리의 세대별 가족 구성을 18세기 육지의 다른 농촌 지역과 비교해본다면 1720년의 산음 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1756년의 곡성 지방과는 매우 흡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⁹⁾

9) 사실 이러한 자료들은 조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조사 기준과 마을의 특성에 적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또 양반 집단과 평민 집단을 비교해보면 2세대 가족에서 평민 집단의 비율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Ⅱ.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

가족원의 결합 형태에 따라 가족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崔在錫(1982: 제3장)의 분류 방식에 따라 1인 가족, 부부 가족, 직계 가족, 방계 가족으로 나누기로 한다.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과도적 가족은 본 자료에서는 단 하나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6〉에 나타난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1897년 덕수리의 가족 유형은 1인 가족과 부부 가족이 약 60%,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이 약 40%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소위 확대 가족이라 일컫는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의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조선 시대의 호적대장을 이용하여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을 분석한 육지의 다른 지방과 비교해보더라도 덕수리의 확대 가족은 어느 지방 못지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6〉을 보면 경상도의 대표적 반촌인 良佐洞의 양반 집단(지배 동족인 孫·李 양성과 타성 양반)보다는 낮지만 1720년 丹城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756년의 山陰 지역이나 1825년의 대구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고 1630년의 山陰帳籍에는 1세대 가족이 72.0%(崔在錫, 1983: 391)로 나타나고, 1807년 良佐洞의 戶籍草案에는 양반의 경우 52.1%, 상민의 경우는 96.8%, 마을 전체로는 63.8%(崔在錫, 1983: 418)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자료에는 미성년자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주 9) 참조.

〈표-6〉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

	1인 가족	과도적 가족	부부 가족	직계 가족	방계 가족	계
양 반	5 (3.8)	-	7.4 (55.6)	47 (35.3)	7 (5.3)	133 (100.0)
평 민	1 (2.8)	-	23 (63.9)	10 (27.8)	2 (5.6)	36 (100.1)
계	6 (3.6)	-	97 (57.4)	57 (33.7)	9 (5.3)	169 (100.0)
1630년 山陰	(25.6)	(0.7)	(65.5)	(6.8)	(1.4)	(100.0)
1720년 丹城	(4.4)	(4.4)	(49.1)	(42.2)		(100.1)
1756년 山陰	(7.9)	(0.6)	(64.6)	(21.7)	(5.2)	(100.0)
1807년 良佐洞	-	-	(47.5)	(42.5)	(10.0)	(100.0)
1825년 大邱	(3.9)	(0.6)	(65.2)	(26.8)	(3.5)	(100.0)
1980년 濟州	(11.4)	(1.4)	(74.5)	(12.7)		(100.0)

1630년, 山陰: 崔在錫, 1983: 389.

1720년, 丹城: 李興卓, 1990(분류 불능자 제외).

1756년, 山陰: 崔在錫, 1983: 434(분류 불능자 제외).

1807년, 良佐洞: 崔在錫, 1983: 417(분류 불능자 제외. 양반 집단만의 집계임).

1825년, 大邱: 崔在錫, 1983: 460.

1980년, 濟州: 李昌基, 1988.

그런데 덕수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 규모가 작고 세대 구성이 단순한 가족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확대 가족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확대 가

족이 40% 정도나 되는데 1세대와 2세대 가족이 90%나 되고 호당 평균 인원이 3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 그리고 부부 가족의 구체적 형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직계 가족은 두 세대 이상의 가계 계승자 부부와 그들의 무배우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다(崔在錫, 1982: 129~30). 가구주 부부와 장남 부부, 그리고 이들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세대 구성면에서는 3세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만큼 가구 규모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덕수리의 직계 가족은 대부분 아래 세대의 미성년자가 결여되어 있다. 전체 직계 가족 57호 중에서 父世代 부부(또는 어느 일방)와 子世代 부부(또는 며느리)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44호(77%)나 되고 있다. 기타 3세대 이상의 직계 가족은 13호에 불과하다. 방계 가족의 경우에도 대부분 아래 세대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호적중초 작성시에 미성년의 소년 인구를 대량으로 누락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직계 가족들이 실제보다 한 세대씩 세대 구성이 축소되고, 가구 규모도 그만큼 작아진 상태로 집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년 인구의 기재 누락으로 인해서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이 단순해지는 현상은 부부 가족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부부 가족은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부부(또는 일방)와 무배우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덕수리의 부부 가족 97사례 중에서 69%에 해당하는 67가족이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들은 세대 구성으로 보면 전부 1세대 가족에 해당된다.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70%나 된다는 것도 미성년 자녀들이 호적 작성 과정에서 대량으로 누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수리 호적중초에는 호당 평균 0.8명~1.4명 정도의

소년 인구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호구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들 중 많은 숫자가 결합 형태상으로는 부부 가족이라 하더라도 2세대 가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외에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23사례, 부부 중 어느 일방과 자녀로 이루어진 결손 가족은 7 가족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는 소년 인구의 과도한 조사 누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적어도 이 자료 내부에서는 논리적 모순없는 내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합 형태별 가족 유형을 신분별로 살펴보았을 때 양반 집단에서 직계 가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의미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Ⅲ. 분가한 장남의 編戶問題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에서 가구 규모와 세대 구성이 단순한데도 확대 가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이 자료 내부에서는 소년 인구의 과다한 기재 누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는 장남도 결혼하면 부모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분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믿어왔다.¹⁰⁾ 이 점

10) 장남 분가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분가 직전의 기혼 자녀와 동거하거나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어느 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다소의 확대 가족(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 생활 환경이 특수한 부속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은 1970년대 이후 제주도 가족 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였으며, 1943년부터 해방 직후까지 제주도에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남긴 石宙明도 제주도 체류 당시에 기록한 그의 유고 『濟州島 隨筆』에서 “(제주도민은) 독립성이 강하여 대개는 장자라도 별거한다(石宙明, 1968: 186)”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는 물론 당시의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토대로 한 것이겠지만, 단순한 통계 수치에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의 제도로써 제주도에 정착되어 있는 모습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1970년대 또는 이보다 앞선 1940년대 중반)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고령자들이 장남 분가를 당연한 관습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도 이미 장남 분가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특수한 한 마을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대 가족의 비율이 4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의외의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897년 당시 덕수리에도 장남 분가의 관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일단 가정해본다면 분가한 장남을 호적중초에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록 장남이 결혼해서 분가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호적을 작성할 때는 부모의 호에 합호하여 동일 호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추정은

보고된 제주도의 확대 가족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주시 광평부락(1972년 조사): 11.5%(濟州大國文科, 1973)

성산읍 삼달리(1975년 조사): 13.7%(崔在錫, 1979: 51)

제주도 전체(1980년 센서스): 12.7%(李昌基, 1988)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첫째는 1896년에 호구 조사 규칙을 새로이 반포하여 실생활 단위로 호적을 작성케 하고, 위반자는 징벌할 것임을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행된 이러한 원칙이 실제 호적 작성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는가에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혈족을 한 호로 편성하던 오랜 관행이 1897년 호적 작성시에도 상당히 적용되었으리라 짐작되며, 특히 결혼한 아들 부부를 한 호에 등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둘째는 새 호구 조사 규칙이 제주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추정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한다. 회수리와 도문리에서는 1896년 이후에도 종전의 편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주 6) 참조). 인근 부락에서는 종래의 편호 방식에 의해 가까운 혈족까지 한 호에 편성하는데 유독 덕수리에서만 장남까지 엄격하게 분호했으리라 보기 어려우며, 새 호구 조사 규칙의 기본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장남을 한 호에 등재하는 일은 광범하게 허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셋째는 봉제사를 담당할 장남을 우대하는 의식이 장남의 합호를 매우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도의 가족 제도에는 비부계적인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조상 제사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가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계적 특성이 강하게 엿보인다. 조상 제사를 중시하고, 제사를 담당할 아들을 선호하며, 조상의 영혼이 깃들인 가옥과 조상 전래의 토지는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봉사손을 확보하기 위한 축첩과 양자 제도가 성행하고, 양자를 들이기 위한 사혼의 관습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崔在錫, 1979; 李昌基, 1992~1993).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이러한 의식과 관습이 당시에 존재했다면 비록 공부상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남까지 분호

하는 데는 상당히 주저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넷째는 한 울타리 안에서 안커리와 밖커리로 생활 공간을 분리하여 부모와 자식이 판살림을 하는 제주도 특유의 분가 방식이 당시에 많이 행해졌다면 호구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한 호로 묶어 편성하는 일은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라 짐작된다. 생활 형편이 지금만 같지 못했을 당시에는 이런 분가 방식이 보다 많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면 덕수리 호적중초에 나타나는 직계 가족 중에는 실제 부세대와 자세대가 분가한 경우가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양대 부부가 공존해 있거나 자부부와 편모가 동거하는 가족 중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덕수리의 직계 가족 57호 중에는 양대 부부가 동거하거나 자부부와 편모가 동거하는 가족이 41호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부세대와 자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수리의 가족 유형에서 나타나는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의 비율은 실제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가구 규모나 세대별 가구 구성에 있어서는 실제의 장남 분가로 인한 축소 요인과 누락 인구의 보정에 의한 확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락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한 아들(또는 며느리) 가족이나 손자 가족과 별도로 부모가 독립된 호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수리에는 장남이 결혼해서 분가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동일 호로 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들이나 손자 또는 며느리를 분적시키고 부모 가족이 독립호를 이루고 있는 사례가 10가족이나 발견된다. 이들은 호적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가 독

립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한 장남을 분가시키고 차남 부부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도 1사례 있는데 이 가족도 장남 분가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숫적으로는 비록 11가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의 장남 분가 전통이 당시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장남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한 부락에서 10여 호나 부모와 자식이 독립해서 생활하는 일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1897년 덕수리의 호적중초를 기본 자료로 하여 19세기말의 제주도 가족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의 구체적 실체를 명료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논의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첨언과 함께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할까 한다.

1) 제주도의 호적중초는 제도사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1896년 새로운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기 이전의 호적중초는 여러 가족을 한 호로 편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을에 따라서는 호구 조사 규칙 반포 이후에도 종전의 편호 방식을 답습하는 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호구 조사 규칙 이후에 자연호 중심으로 작성한 호적중초라

하더라도 결혼한 장남의 가족을 분적시키지 아니하고 부모의 호적에 합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 유형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소년 인구의 기재 누락이 매우 많아 인구 구성, 인구 변동, 가구 규모, 세대별 가족 유형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자료의 해석에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사망자의 기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호적증초의 구체적 기록 내용을 각 연도별로 대조해보면 개인의 인적 사항 즉 연령, 직역과 신분, 처첩 관계 등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이 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특히 직역과 신분의 상치는 기재 착오 때문인지 아니면 신분 변동이나 신분제의 혼란에서 연유된 것인지 면밀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덕수리의 호적증초에 나타난 가족 구성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호적증초의 자료만으로 볼 때는 확대 가족(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의 비율이 40% 정도로 나타나지만 분가한 장남을 부모 가족에 편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의 확대 가족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보며, 장남 분가 현상을 보여주는 가족이 10여 호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1897년 당시에 도 장남 분가 현상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 호당 평균 인원이 3명 정도로 나타나고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년 인구의 기재 누락과 분가 장남의 편호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호당 평균 0.8명~1.4명 정도로 기재 누락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년 인구를 보정한다면 호당 평균 인원은 늘어나고

세대별 가족 구성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 호에 포함되어 있을 분가한 장남 가족을 실생활 단위로 독립시킨다면 호당 평균 인원은 감소하고 세대 구성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영향을 서로 상쇄한다면 실제와 통계 사이의 오차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신분에 따라 가족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본 자료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신분의 분류 방법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덕수리에서는 신분이 가족 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인지 현재로선 판별하기 어렵다.

4)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19세기말의 제주도 가족은 규모 면에서 소규모 가족이고, 구성면에서는 단순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장남 분가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제약이 많은 한정된 자료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용한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高昌錫(1993), 「해제」,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I-IV)』,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權泰煥·愼鏞廈(1977), 「조선 왕조 시대 인구 추정에 관한 일시론」, 『동아문화』 제14집.
- 金東柱(1993), 「19세기 戶籍制運營의 弊端과 對策」, 『濟州文化研究』(玄旨 金榮敦博士 華甲紀念論文集), 도서출판 제주문화.

- 金錫禧(1988), 「彥陽縣戶籍大帳解題」, 『慶尙道彥陽縣戶籍大帳(下)』,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金泳謨(1982),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 茶山研究會(1985), 『譯註 牧民心書 III』, 創作과批評社.
- 石宙明(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 尹鍾周(1973), 『人口學』, 한얼문고.
- 은기수(1987), 「조선 후기 인구 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8.
- 李樹健(1972), 「朝鮮初期 戶口研究」, 『嶺南大論文集』 5.
- 李昌基(1982), 「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成」, 『人口保健論集』
2-2, 韓國人口保健 研究院.
- (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제주대 탐라문
화연구소.
- (1988), 「濟州島의 家口構成」, 『人文研究』 9, 영남대 인문과
학연구소.
- (1992),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和 環境: 挑戰·適應·超
越의 메커니즘」, 『濟州島研究』 9, 濟州島研究會.
- (1993), 「濟州島 家族制度의 特徵」, 『社會文化論叢』 8, 社會
文化嶺南學會.
- 李興卓(1990), 「1720年度丹城縣戶籍臺帳資料를 통한 李朝中期 家口
形態 分析」, 『韓國人口學會誌』 13-2, 韓國人口學會.
- 丁若鏞, 『牧民心書』, 卷六 「戶典」, 戶籍條.
- 濟州大國文科(1973), 「가족」, 『國文學報』 5.
- 조성운(1991),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27, 한국사회사연구회.
- 崔在錫(1978), 「濟州島의 自生的 核家族」, 『세계의 文學』 겨울호.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82), 『韓國家族研究』(개정판), 一志社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崔弘基(1973),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8집.